

자료번호 : A1-2015-0135

자 료 명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2015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이 조사에서 얻은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설문조사

ID					
----	--	--	--	--	--

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연구의 일환으로 관련 제도에 참여하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 조사 연구 전반에 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조사
기관**

한국행정연구원

Q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요구한 자료들이나 공개된 자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Q6.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공무원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예산의 논의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Q7.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귀하가 제시한 의견이 예산편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공무원으로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인터넷 또는 책자, 기타 문서 등) 답변을 받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Q8. 의견 반영 여부를 통보 받고 계시다면 답변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Q12.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 이후 예산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노인,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의 이익이 대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Q13.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 이후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통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Q14.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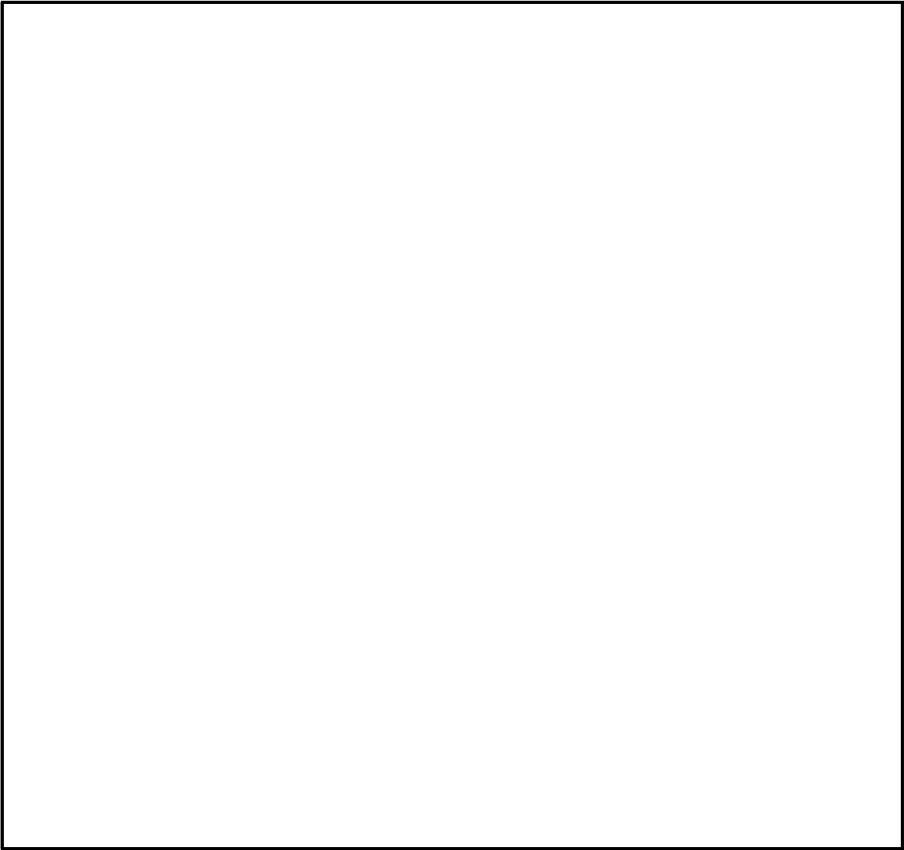
Q15.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호	문제점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그렇 지 않다	매우 그렇 지 않다
1	주민들이 자치단체 재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					
2	주민들이 참여예산제도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3	주민들이 참여예산제도의 시행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4	공무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에 적극적이지 않다.					
5	공무원들이 참여예산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제공에 비협조적이다.					
6	예산편성기간이 짧아서 주민참여예산활동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					
7	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8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다.					
9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					

Q16.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래 항목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활성화 요인	매우 필요 하다	필요 하다	보통	필요 하지 않다	매우 필요 하지 않다
1	시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					
2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					
3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4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5	지방의회와의 협력관계					
6	예산학교 등 주민, 공무원 대상 교육 확대					
7	주민참여 예산반영을 위한 객관적인 심의기준 마련					
8	알기 쉽고 편리한 재정정보 제공					
9	집단지주의와 같은 역기능 통제					
10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자질 향상					
1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전문가, 소외계층, 성별균형 등 참여 확대)					
1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지원(수당 지급 등)					
13	우수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에 대한 자유의견



■ 응답자 일반사항

본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신상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와 제34조(통계작성사무종사자등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SQ1. 귀하가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① 특별시 또는 광역시	② 도	③ 시	④ 군	⑤ 자치구

S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SQ3. 귀하의 만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SQ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예시: 공무원, 대학교수, 공공 및 민간 연구원, 자영업, 금융권회사원, 민간 기업회사원, 공기업직원, 교원 및 교직원, 주부, 학생 등

설문에 성실히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